

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2779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05. 10. 허옥희 의원 등 6인

나. 회부일자 : 2024. 05. 16.

다. 상정·의결일자 : 2024. 05. 31. 의회운영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설명자: 허옥희 의원)

가. 개정이유

-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(2023. 8. 16. 공포, 2024. 2. 17. 시행)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제도 운영 실정에 맞게 내용을 수정·보완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1). 청구인의 대표자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5조제3항)
- 2). 청구인명부를 읍면 별로 구분하여 제출 (안 제7조제2항)
- 3).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보정을 통지하고,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도록 규정하였으며, 보정기간을 1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수정 (안 제11조)
- 4). 주민조례청구의 철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 (안 제11조의2)

다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: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4항, 제10조제1항, 제11조제4항,

- 2)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- 3)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4-25호
 - 입법예고 기간: 2024. 5. 10(금) ~ 2024. 5. 15.(수)
 - 의견반영 등 조치내용: 해당없음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조래훈)

○ 개정목적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일부 개정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제도 운영 실정에 맞게 내용을 수정·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.

○ 주요 검토내용

- (안 제5조제3항)에서는 청구인명부 제출 전까지 대표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(안 제7조제2항)에서는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청구인명부를 읍·면 별로 구분하여 제출하도록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.
- (안 제11조)에서는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보정을 통지하고,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도록 하고, 보정기간을 1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수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(안 제11조의2)에서는 주민조례청구 수리·각하 결정전까지 주민조례청구 철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청구 진행 시 주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○ 종합 검토의견

-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저촉 여부 및 조례 개정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4. 5. 31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